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 환경부공고 제2008-1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12.28)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민간시설 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조문 정비필요

2. 주요내용

규칙 별표2(유지기준), 별표3(권고기준) 중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명칭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법인·민간·직장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보육시설'로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꿈질방,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 ₂ (ppm)	Rn (pCi/l)	VOC ($\mu\text{g}/\text{m}^3$)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꿈질방,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0.01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 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예비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별표 6 제10호).

나. 특별대책지역 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 6 제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1일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일일 최대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라, 동 지역 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 관리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01조제1항제11호).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제101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01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제1항 제11호의 경우 제49조제2항에 의한 운영일지를 종합한 운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8-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브롬산염'과 '스트론튬'에 대한 수질기준이 신설하게 되어 2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물 중 브롬산염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스트론튬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으로 함.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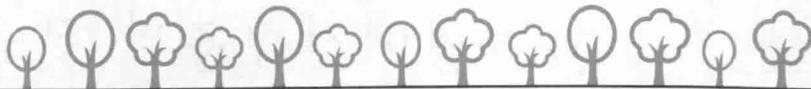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일반항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브롬산염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금속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스트론튬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내용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ES 05358.1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 2008
(Bromate-Ion Chromatography)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 중 브롬산염의 분석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 15061과 같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ES 05414.1
스트론튬-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2008
(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 중 스트론튬의 분석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 11885와 같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ES 05414.2
스트론튬-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2008
(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 중 스트론튬의 분석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 17294-2와 같다.

◎ 환경부공고 제2007-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일건물내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 나.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조건, 측정지점수, 측정시간, 측정결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4장 제3절 신설
- 다.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자료 평가를 위한 서식8 신설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절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1. 측정점

- (1)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 m 높이로 한다.
- (2) 측정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2. 측정조건

2.1 일반사항

-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반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측정사항

- (1) 측정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2) 측정은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옥외 및 실내 복도 등을 통한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3) 배경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의 조작

3.1 사용 소음계

KSC-1502에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일반사항

-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 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 (5) 소음도기록기의 기록속도 등은 소음계의 동특성에 부응하게 조작한다.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 (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측정시각 및 측정지점수

대상 소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간에 실의 중앙점을 포함한 3개소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5.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5.1 자료분석방법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한다.

5.1.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로 한다.

5.1.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 이상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 (1)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 폭이 5dB 이내일 때



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 (2)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최대치부터 소음도의 크기 순으로 10개를 택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5.1.3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 (1)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dB이내일 때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 (2)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dB을 초과할 때에는 [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2의 방법에 의한 등가소음도, 다만, 등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를 사용할 때에는 5분 동안 측정하여 소음계에 나타난 등가소음도로 한다.

5.2 배경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9dB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2dB 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 만

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 기록

6.1 평가

5.2항으로부터 구한 대상소음도를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6.2 측정자료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8에 의하여 기록한다.

[서식 8]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 측정년월일	년	월	일	시	분까지	분부터		
2. 측정대상	건물소재지 : 건물명칭 :							
3. 관리자								
4. 측정자	소속 :	직명 :	성명 :	(인)	소속 :	직명 :	성명 :	(인)
5. 측정기기	소음계명 : 부속장치 :					기록기명 :		
6. 측정환경	주요 소음원 :							
7. 측정 소음도와 측정점 위치도								
측정점	소음도 1	소음도 2	측정점 위치도					
	산술평균 소음도							
1								
2								
3			(지역구분 :)					

8.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 가. 측정소음도 : dB(A)
나. 배경소음도 : dB(A)
다. 대상소음도 : dB(A)

